

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

검 토 보 고 서

I 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819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17년 5월 31일
- 라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1일

II . 예비비 지출 개요

-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의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62억 7천3백 만원으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예비비 금액	예비비 사용 이유
계	6,273,245	
보전지출	5,976,041	○ DMC E2-2용지 매매대금 반환소송 1심 선고결과에 따른 반환금 지급
패션산업 기반 확충	297,204	○ 서울패션위크 약정금 소송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

III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-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의 예비비는 총 2건에 예산 지출액은 총 62억 7,324만원임.
- 예비비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DMC 부지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따른 반환금 1건과 서울시패션위크 약정금 지급 관련 판결에 따른 판결금 1건임.

1. DMC 부지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따른 반환금 지급

- 서울시는 DMC 단지의 E2-2 용지를 첨단업무용지로 지정한 후에 상암 디지털 프레스 센터를 건립하기로 부동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2월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통하여 서울신문사가 주간이 된 상암디지털 프레스센터(SDPC)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자로 선정 하였음.
 - SDPC 컨소시엄의 참여 기업과 지분구조는 서울신문사(37%), 스포츠 서울(9%), 스포츠서울미디어(2.2%), 머니투데이(25%), 보라존(11%)임.

<E2-2 용지 개요>

사업자	계약일	대지면적	사업비	사업목적	* 지정용도	건축 규모
서울신문 컨소시엄(6개사)	'08.10.30.	2,923㎡	토지대금 149억원	디지털 프레스센터 건립	90% 이상	지하 6F/지상 20F 연면적 37,798㎡

* 지정용도(90% 이상): 디지털미디어와 방송 엔터테인먼트, IT관련 통합솔루션 및 게임관련 콘텐츠 등 생산·유통

-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컨소시엄 중 보라존이 경영악화로 지분을 머니투데이 등에게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의 잔금을 미납하는 등 컨소시엄 회원사 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2014년 2월에 서울시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.
- 서울시는 총 금액 181억 2천3백만원 중 계약 해제에 따라 위약금, 연체료 등을 포함하여 61억 6천만원을 공제하고 119억 6천 3백만원을 컨소시엄에 반납하였음.
- 하지만 컨소시엄은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어 서울시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반납된 금액을 제외한 납부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72억 3천 1백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2015년 7월에 제기하였음.
- 이에 법원은 2016년 2월 서울시가 공제한 61억 6천만원 중 위약금의 일부(7억4천3백만원)과 토지사용료의 일부(3억 6천7백만원)를 제외한 58억 2천5백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컨소시엄에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음.
- 따라서 서울시는 해당 사건의 후속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패소시에는 과도한 반환이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환금(58억 2천5백만원)과 반환이자(3억 6천5백만원)에서 기 반환한 연체료(2억1천4백만원)를 제외한 59억 7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임.

2. 2013 서울패션위크 약정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

- 서울시는 2013년 2월 국내 디자이너 패션쇼와 수주전시를 통한 패션 비즈니스 및 패션이벤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패션위크 사업의 운영하고자 공모를 통하여 (주) 이노션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였음.
- (주) 이노선은 총 사업비 39억 2천1백만원에서 참가비 수익 8억 5천6백만원을 제외한 30억 6천5백만원을 서울시에 보수로 청구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22억 7천4백만원을 수령하고 최종 정산액 7억 9천만원이 남아 있었음.
- 하지만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(주) 이노선이 일부의 위탁사무를 제3자에 하도급을 주어 수행하며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상당액을 실제 소요비용에서 제외하고 5억 5천4백만원을 최종 정산액으로 지급하였음.
- 이에 따라 (주) 이노선은 최종 정산액 중 잔액인 2억 3천5백만원에 대한 지급과 연 20%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시는 1심에서 패소한 후에 이에 불복하여 항소(2심)와 상고(3심)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음.
- 2016년 9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서울시는 (주) 이노션에게 원금과 원금 지급일까지 20%의 지연손해금을 예비비로 2억 9천7백만원을 집행한 것임.

3. 종합의견

-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,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른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에 예비비의 지출을 제한하고 있음. 또한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이 어렵고 정규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시급성과 기존 예산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범위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.
- 2016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경위를 살펴보면, 서울시가 피고가 된 소송의 패소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소송의 제기와 소송의 진행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.
- 또한 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」에 따라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반환금과 판결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높은 이율(20%, 2015년 10월 1일부터 15%)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반환해야할 시급성도 인정될 수 있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.